성주군 분뇨·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가.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성주군수는 관할구역안의 가축분뇨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의 방지와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

나. 성주군 분뇨·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2011년 1월에 사용개시 할 예정인 분뇨·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을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가축분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공공처리시설 관리·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시설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-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

나. 가축분뇨 수집 운반대상 및 지역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수거 대상지역은 성주군 전역으로 한다.
- 신고대상 및 규모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.

다. 분뇨·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- 분뇨·가축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라.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부과·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- 처리시설 사용료는 허가대상 10원, 신고대상 9원, 신고미만은 8원으로 한다.
- 대행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.

4. 관련법령

가.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같은법 시행령

나. 하수도법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

○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'법률'이라함) 제3조 "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안의 가축분뇨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의 방지와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 하여야 한다"는 근거와 2012년부터 축산분뇨 등의 해양투지 금지, 그리고 현 성주분뇨 처리장의 노후로 낙동강 및 대구시 취수원의 상류에 위치한 우리군은 수질오염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지리적 여건에 있습니다.

○ 따라서 분뇨·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2011년 사용개시에 앞서 「성주군 분뇨·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함이며, 조문의 구성은 목적, 관리운영, 수집운반에 관한 대상·지역·대행, 수수료의 부과징수, 대행업자의 의무, 대행업자의 지도감독, 징수의 준용 및 시행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. 그 구성과 내용은 기존 상주, 칠곡 등 도내 6개 시·군과 유사함은 법률 제 24조(공공 처리시설의 설치) 제25조(공공처리시설의 운영) 제26조(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) 및 수도법 제41조(분뇨처리 의무)를 근거로 제정 하고자 합니다.

○ 결론적으로 조례의 제정근거와 상위법의 명시 그리고 낙동강 수계상의 5개 자치단체와의 시설운영 형평성과 일반성에 어긋남이 없으며 절차적 입법예고를 거쳤기에 법적요건과 안정성에는 차질이 없으나

다만. 본 조례가 현실성있고 적절한 집행력을 갖추며 시설물의 안정 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기준 설정, 허가축산농가의 시설이용에 기준과 축산농가 간의 형평성, 가축분뇨의 재활용 대상, 과태료의 징수절차, 담당자와 시설운영자의 교육 등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의 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.

○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